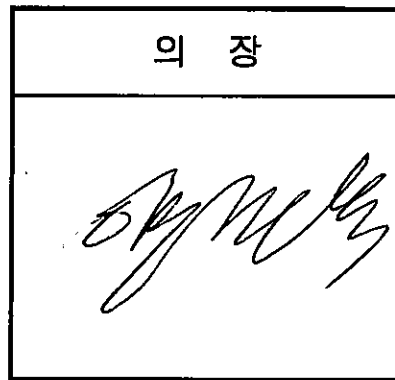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  
시민 곁으로 한뼘 더!

# 시 장 제 출 의 안 첩 회



No. 48

2018. 6.

서울특별시의회  
(의사담당관)

# 시장제출 의안철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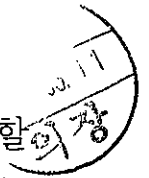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(의안·동의의 철회)에 따라  
시장제출 의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함.

철회요청의안

연번 (의안 번호)	의안명	사유	제출자 (소관상임위)	비고 (철회요청 일자)
1 (2433)	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○ 계류되어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후 추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합하여 제281회 정례회에 제출 예정	시 장 (행정자치)	2018. 5.31

철회절차

-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 
경우 그 청구만으로 철회가능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)



향후계획

- 철회사실을 시장과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

붙임 : 1. 철회요청 공문 1부.  
2. 관련안건 1부. 끝.